의안번호	제 819 호			
의 결	2021년 월 일			
연 월 일	(제 회)			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

발 의 자	황규철 의원 등 8인
발의연월일	2021년 8월 일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(황규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19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일

발 의 자 : 황규철, 김기창, 서동학,

박우양, 연철흠, 전원표,

박형용, 오영탁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 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, 안 제5조)
- 라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마. 저상버스 운행실태 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바.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안 제10조)
- 사.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, 운영 및 기능한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11조, 안 제12조)

아.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육 및 시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3조, 안 제1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 의 :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8.18. ~ 2021. 8.23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.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와 같으며,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저상버스" 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가 낮고 훨 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.
 - 2. "광역이동지원센터" 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, 시·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.)는 교통약자가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시·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전담부서의 설치)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.
- 제5조(관계기관의 협조)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·군·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제6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시·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.
 - 1. 도내 시·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·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·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·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 력체계 구축 방안
 - 4.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 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5. 시각 ·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
 - 6. 시ㆍ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
 - 7.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에 관한 사항
 - 8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·단체,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제7조(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) ① 도지사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이하 "노선버스 운송사업자"라 한다.)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ㆍ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.
- ④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하는 지방도를 정비하여야 한다.
- ⑤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8조(저상버스 운행실태 조사) ① 도지사는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시· 군의 저상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내・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9조(특별교통수단의 도입) 도지사는 시·군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원칙)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·군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운행시간(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원칙)
 - 2. 운행지역
 - 3. 이용요금
 - 4. 이용방법(비예약 운행 원칙)
 - 5.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
- 제11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도지사는 시·군 특별교통수단 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연계를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제12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시·군 이동지원센터 간 연계
 - 2.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시·군간 정보협력 및 지원
 - 3.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등 운영관리
 - 4. 타 시 · 도 이동지원센터와의 연계
 - 5. 그 밖에 광역이동지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3조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 13 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 - 2. 이동편의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3.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
 - 4.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
 - 5.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시장·군수가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직접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거나 「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연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4조(홍보)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주민과 교 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교통약자" 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교통수단" 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 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(이하 "버스"라 한다)
 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
 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 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 - 라.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
 - 마. 「해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
 - 바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
- 3. "여객시설"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.
 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
 - 나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 시철도시설
 - 다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
 - 라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

- 마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. 「항만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
- 4. "도로"란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(「도로법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)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.
- 5. "교통사업자"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철도사업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장하시설법」, 「항만법」, 「해운법」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·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·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·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- 6. "교통행정기관"이란 교통수단의 운행·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·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- 7. "이동편의시설" 이란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- 8. "특별교통수단" 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.
-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7조의2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<u>도지사는</u>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</u>

- 동편의 증진 지원계획(이하 "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관할 행정구역 내 시·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·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·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특별교통수단 도입·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-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.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제13조(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) ① 교통사업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② <u>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</u>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④ <u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,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</u>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 ①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(이하 "노선버스 운송사업자"라 한다)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
- 2.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
- 3.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(이하 "저상버스등"이라 한 다)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 히 편성할 것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 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(臺數) 이상 운 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 다.
- ③ 시장·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<u>도지사가 교</u>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, 저상 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 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,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(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~ ⑥ 〈생략〉

- 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있다.

④ 〈생략〉

-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,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·광역시·도까지로할 수 있다.
- ⑥ 국가 또는 <u>도(道)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</u>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,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,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 조·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⑧ <u>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</u>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저상버스 도입 지원
-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
-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

2. 비용발생 요인

-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
-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설치 및 운영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5조(저상버스의 도입)
- 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도입)
- 제8조(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 규모는 2021년의 경우 현재 세 출예산 편성액을 계상하고, 이후는 최근 4년간(2018~2021)의 평균 예산액 을 적용
 - 4년간 평균 예산액(국·도비) : 3,095,000천원(국비 1,447,000, 도비 1,648,000) * 시군비 1,775,000천원 별도
-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기존 시·군 조직을 통합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적용
 - 하드웨어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: 약 500,000천원
 - 유지보수비용 : 연 50,000천원
- 나. 추계 결과 : '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5,704,962천원 소요
- 다. 재원조달방안

-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: 국고보조금 및 도비(일반회계)
 - 저상버스 도입보조
 - ·CNG버스 : 국비 50%, 도비 25%, 시군비 25%
 - ·전기버스 : 국비 46%, 도비 27%, 시군비 27%
 - · 수소버스 : 국비 24%, 도비 38%, 시군비 38%
 -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: 국비 50%, 도비 15%, 시군비 35%
-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: 도비(일반회계)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	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	세 입	1,226,241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7,014,241
	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	1,226,241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7,014,241
	세 출	3,124,962	3,145,000	3,145,000	3,145,000	3,145,000	15,704,962
	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	2,624,962	3,095,000	3,095,000	3,095,000	3,095,000	15,004,962
	광역이동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	50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700,000
	재원 조달	3,124,962	3,145,000	3,145,000	3,145,000	3,145,000	15,704,962
	소 계	1,226,241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7,014,241
의존 재원	보조금	1,226,241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1,447,000	7,014,241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1,898,721	1,698,000	1,698,000	1,698,000	1,698,000	8,690,721
	지방세	1,898,721	1,698,000	1,698,000	1,698,000	1,698,000	8,690,721
	세외수입	-	-	-	-	-	-
	시·군비	1,499,921	1,775,000	1,775,000	1,775,000	1,775,000	8,599,921